

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5. 2. 6.
복지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안건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제출자: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어르신장애인과장)
- 제출일자: 2025. 1. 23.(목)
- 회부일자: 2025. 1. 23.(목)
- 상정 및 의결: 제30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(2025. 2. 6.)

2. 개정이유

- 고령인구의 증가로 노인복지 수요 충족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여 어르신들의 노후 건강·여가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.

1. 주요내용

- 명칭 및 위치(안 제2조)

4. 관계법령

- 「노인복지법」 제37조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내 노인복지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자 2025년 7월말 준공예정인 월배노인종합복지관의 명칭 및 소재지를 규정하는 것으로,

-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해 고령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, 우리구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살펴보면 2022년 12월 현재 인구비율은 60세 이상 25.4%, 70세 이상 10.4%에서 2024년 12월 현재 60세 이상 28.3%, 70세 이상 12.0%로 전체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인구수 및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.

달서구 내 주민등록 인구통계

(단위: 명, %)

구분	총인구수	60세 이상	70세 이상	비고
2022. 12월	536,989	136,231 25.4%	56,028 10.4%	
2023. 12월	527,781	141,325 26.8%	59,026 11.2%	
2024. 12월	522,021	147,566 28.3%	62,470 12.0%	

※ 출처: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(<https://jumin.mois.go.kr/>)

- 이에 따라 노인종합복지관인 월배노인종합복지관을 만들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의 내용은 그 필요성과 적합성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게 규정된 것으로 사료되며,
- 다만, 「노인복지법」 제37조 및 보건복지부 「2024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」에 따라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 시설기준과 최소 직원 기준을 맞추어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.

- 시설기준

구분	사무실	식당 및 조리실	상담실 또는 면회실	집회실 또는 강당	프로 그램실	화장실	물리 치료실	비상 해 대시설	거실 또는 휴게실
노인복지관	1	1	1	1	1	1	1	1	1

※ 출처: 「2024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」 1권, 132쪽

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지: “특이사항 없음”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